#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82

발의연월일: 2022. 8. 30.

발 의 자:김교흥·강득구·김수흥

문진석 • 박성준 • 신영대

유동수 • 이성만 • 정일영

허종식 의원(10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소전기승용자동차 가격의 10배에 달하는 수소전기화물자 동차(화물적재 11.5톤 기준 약 7.1억원)의 경우 예상 취득세액이 2,840 만원에 달하여 수소전기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설정된 140만원의 감 면한도를 적용받는 현행 특례만으로는 세제 경감 효과가 떨어져 수소 전기화물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소전기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금액과 무관하게 취득세 전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수소전기화 물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 66조제5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중 "고시된 자동차"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분에 대하여는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생 략)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 -----<u>고</u>시된 자동 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 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제외한다)-----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신 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

월31일까지취득세를면제한다.